'26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문

□ 신청절차

○ 내국인 구인등록(워크넷 www.work.go.kr)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fes.kbiz.or.kr)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

※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(모든 업종 7일)을 거쳐야 함.

구 분	워크넷 게재 기간
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	최소 7일
워크넷 구인노력과 **일간지(벼룩시장,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) 구인노력**이 **3일 이상 병행**된 경우	최소 3일

□ 신청서류 [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→ 지원사업 →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]

-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(필수)
-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, 위임장(필수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)
- 사업장 사진(2가지 사진 필수) * 사진 용량 : 하나당 2.5MB 이하

  ① 사업장 전경사진,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
-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(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,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)

구 분	추가 서류제출
기숙사로 **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, 숙박시설(여관 등)을 제공**할 경우	임대차 계약서 제출
기숙사로 **가설건축물을 제공**할 경우	가설건축물 신고필증(용도 임시숙소) 제출
기숙사로 **사업장 건물,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**할 경우	건축물 대장(용도 기숙사) 제출

*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 발급처: 관할 행정복지센터

- 기숙사 사진(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) * 사진 용량 : 하나당 2.5MB 이하

① 기숙사 전경사진	② 침실 내부 사진	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
④ 화장실 내부 사진	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	⑥ 화장실,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
⑦ 냉방시설 사진	⑧ 난방시설 사진	⑨ 소화기 사진
⑩ 화재감지기 사진	⑪ 수납공간 사진	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

□ 대상국가 *28년부터 카자흐스탄 도입 예정

○ **제조업 : 17개국**(네팔, 동티모르, 방글라데시, 필리핀, 스리랑카, 중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파키스탄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베트남, 태국, 타지키스탄)

○ **서비스업·호텔콘도업·음식점업 : 11개국**(중국, 네팔, 우즈베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네시아, 키르기스스탄, 필리핀, 태국, 미얀마, 베트남, 몽골)

○ **광업 : 4개국**(우즈베키스탄, 중국, 키르기스스탄, 몽골)

○ **임업 : 6개국**(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네팔, 몽골, 베트남, 미얀마)

□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

제조업·광업		서비스업·호텔·콘도업			임 업	
내국인 피보험자 수	고용한도	내국인 피보험자 수	일반	택배	내국인 피보험자 수	고용한도
1명~10명 이하	내국인 피보험자수 + 10명	5명 이하	4명	12명	1명~10명 이하	15명
11명~50명 이하	30명 (단,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)	6명~10명 이하	6명	18명	11명~50명 이하	20명
51명~100명 이하	35명	11명~15명 이하	10명	30명		
101명~150명 이하	40명	16명~20명 이하	14명	42명	51명~100명 이하	25명
151명~200명 이하	50명	21명~100명 이하	20명	60명		
201명~300명 이하	60명				100명~	30명
301명~	80명	101명~	25명	75명		

*서비스업 中 **음식점업** :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→ 1명, 5인 이상 → 2명.

□ 사업장별 고용한도 조정

○ (비수도권 제조업체) 사업장별 **추가고용** 한도를 현행 20% → 30%로 상향(다만, 내국인근로자수 초과 불가)

내국인 근로자수	허용인원	비수도권 추가 <기존 20%>	비수도권 추가 <상향 30%>
1-10명	내국인수 + 10명	1.2 x (내국인수 + 10명)	**1.3 x (내국인수 + 10명)**
11-50명	30명 (내국인수 2배 이내)	36명 (내국인수 2배 이내)	**39명** (내국인수 2배 이내)
51-100명	35명	42명	**45명**
101-150명	40명	48명	**52명**
151-200명	50명	60명	**65명**
201-300명	60명	72명	**78명**
301명 이상	80명	96명	**104명**

○ (U턴기업)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U턴기업은 **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 허용**, 외국인 **추가고용 상한(50명) 삭제**

* 현재 U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추가고용(50인 한도) 허용

□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

구 분	일반고용허가제(E-9)
제조업	-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※ 단,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▪ 중소기업(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'중소기업확인서') ▪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'뿌리기업확인서'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'중견기업 확인서')
서비스업· 음식업· 호텔·콘도업	- 건설폐기물처리업(3823)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(46791) - 냉장·냉동 창고업(52102) (내륙에 위치한 업체) -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(581)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(59201) - 한식 음식점업(5611), 외국식 음식점 (5612) ※ 한식업+외국식업 중 업력(業歷)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※ 표준직업분류상 '주방 보조원'(95220), '음식서비스 종사원'(45311) 고용에 한함 - 호텔업(55101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 중 호스텔업 ※ 서울, 부산, 강원, 제주, 경북, 전북 소재 업체에 한함 ※ 표준직업분류상 '건물 청소원'(94110) 고용에 한함 ◈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(92101) -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(38) ※ 단, 「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」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-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(46102) -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(46319) - 택배업(49401) ※ 표준직업분류상 '상하차'(92111), '화물 분류원'(92120) -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(52939) ※ 「항공사업법」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-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(52941) ※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
광업	-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·운반·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- 한국표준산업분류상 '광업'(06금속광업~07비금속광물광업)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「광업법」 제3조제3·4호에 따른 '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" ↳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'광업원부'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'광물생산보고서'로 확인 - 한국표준직업분류상 '광업 단순 종사원'(91002)
임업	- 임업 사업자 중 「산림사업시행법인, 종묘생산법인」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- 한국표준산업분류상 '임업(020) 중 임업 종묘 생산업(02011), 육림업(02012), 벌목업(02020), 임업 관련 서비스업(02040) ☞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-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'임업 단순 종사원'(99102)